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663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수상레저 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8910	조경태의원	2025.03.13.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5.4.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후 해양수산법안심사소 위원회 회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6.9.16.) 상정, 축조심사
	2211478	임호선의의원	2025.07.15.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후 해양수산법안심사소 위원회 회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6.9.16.) 상정, 축조심사
	2218142	윤준병의원	2026.04.07.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6.8.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후 해양수산법안심사소

				위원회 회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6.9.16.) 상정, 축조심사
--	--	--	--	---

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09.16.)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17.)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환각물질 복용 관련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 나.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조종면허 취득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이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0조 등).
-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강사 또는 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9조 등).
- 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 바.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약물·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의 조종과 복용 여부 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함(안 제28조 등).
- 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주취조종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재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함(안 제61조 등).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종면허”를 “조종면허의 범위”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 기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으로,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를 “단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을 “면허시험”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지정취소”를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3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제4항”을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면허시험”을 “그 밖에 면허시험”으로, “지정취소”를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방법·절차 및 세부기준”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을 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5.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를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로,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를 “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취소”를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지정을”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안전교육”을 “그 밖에 안전교육”으로, “지정취소”를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를 “방법·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한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조종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준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고,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7조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준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

9호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약물의”를 “약물·환각물질의”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를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이”를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로,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를 “단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정지 절차,”를 “대행 및”으로,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보고”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8조에 따른 면허시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은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대행기관을 운영한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방법·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종사자”를 “종사자의 결격사유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사항은”을 “사항과 종사자의 준수사항은”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2항 및 제5조의12에 따른 죄

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도 및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장부와 그 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설·장비 및 기관의 운영 개선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약물복용”을 “약물·환각물질 복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을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8조의2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동력수상레저기구를”을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

구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술에”를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술에”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을”로,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를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을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

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5의2.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을”로, “약물복용 등으로”를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

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의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조종면허) ① (생략)	제5조(조종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u>조종면허</u>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u>구분한다</u> .	② <u>조종면허의 범위</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u>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 기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

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6. (생략)

② (생략)

③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장비·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장비·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중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⑤ 면허시험-----

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
구 조종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 설>

<신 설>

-----.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
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면허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
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
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
면허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육내용을 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면
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인력·
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생략)

3.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설>

<신설>

<신설>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

-----.

1. -----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1호-----

4. 제1항제2호-----

5.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신 설>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장비·시설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 설>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면허시험-----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방법·절차 및 세부기준-----.

제13조(수상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단체에-----
--.

<삭 제>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

<신 설>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생략)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신 설>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

-----.

1. -----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2. (현행과 같음)

3. 제1항-----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

<신 설>	<u>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한 경우</u>
<신 설>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신 설>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u>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u>그 밖에 안전교육-----</u> <u>---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u> <u>-----방법·절차</u> <u>및 세부기준 등에-----</u> <u>-----.</u>
제15조(면허증 발급) ① (생 략) <신 설>	제15조(면허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u>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조종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고, 조종면허를 받은</u>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사람이 제17조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준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 ----- ----- ----- ----- ----- ----- -----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 -----. 1. ~ 8. (현행과 같음)
--	---

9.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0. (생략)

② (생략)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
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
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약물·환각물질의---

-----수상레저기구를 조
종하거나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로 한정한다)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해
양경찰청장이-----
---단체로-----
-----.

<삭제>

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
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
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
를 포함한다)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
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
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한 경우

③ (생 략)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
라 보고받은 면허시험 대행업
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확인
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
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
시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시험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대행 및-----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정지 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보고-----
-----.

제18조의2(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8조에 따른 면허시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은 인력·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대행기관을 운영한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종사자 교육) <신 설>

④ 그 밖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방법·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 대상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설>

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2항
및 제5조의12에 따른 죄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
-----사항과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

제19조의2(지도 및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
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
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 ·
장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
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
여 시설 · 장비, 장부와 그 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설 · 장비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및 기관의 운영 개선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약물·환각물질 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①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하 같다)의 영향 또는-----

-----.

②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간이시약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

제56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시험대행기관: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② ~ ④ (생략)

제58조(청문)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56조(과징금) ① -----

-----.

1.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2. -----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3. -----제18조의2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청문) ① -----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② (생략)

제61조(벌칙) <신설>

<신설>

-----.

1. 제10조제3항-----

2. 제14조제3항-----

3. 제18조의2제3항-----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신 설>

<신 설>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

<신 설>

<신 설>

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

<신 설>

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⑦ -----

-----.

1. 2. (현행과 같음)

3. -----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4.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술에-----

--사람

5. 제28조제1항을-----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신 설>

6.·7. (생 략)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 2의3. (생 략)

2의4.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신 설>

5의2.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7.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

-----.

1. 제19조제2항-----

2.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28조제1항을-----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2의5.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3. ~ 11. (생략) ② ~ ④ (생략)	<u>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u> <u>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u> <u>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u> <u>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u> <u>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하</u> <u>다)</u>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